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 임을결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마지막취업에서의퇴직문제에대한판결에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 N.C. Gen. Stat. § 96-14()에의거하여일,원고가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실격이아니라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 (원고)(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에게제출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14.)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실격이(아니)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2. 일부터원고는로서고용주를위해일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는)(그녀는)일고용주를위해마지막으로일하였습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 중 2

법의규정:

고용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코드의 3304
항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다음 개인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
한 혜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또는 교장 행정직원.
- (2) 교육기관을 위해 다른 역량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 (3) 교육서비스기관의 고용에 있는 동안 이 항의 제(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서비스를 수행한 개인.
“교육서비스기관”이라는 용어는 본코드 3304 조에 정의된 것
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N.C. Gen. Stat. §96-14.1(e).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23 장 (Chapter) 부칙 C
(Subtitle)에 있는 연방 실업 세법 (Federal Unemployment Tax Act)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상은 3309(a)(1) 항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서비스를 기준으로 지불되는 보수와 동일한
액수를,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불 된다; 예외는 —

(i) 3309(a)(1) 항이 적용되는 교육 기관의 교육, 연구, 또는 주요
행정 능력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번의 연속 학업
연도 또는 학기 (또는, 계약상 그러한 기간 동안 연속 계약
기간이 아닌 정규 계약 기간 사이의 유사한 기간이 제공되는
경우) 사이에 시작되는 주의 서비스에 근거한 보상은, 개인이
그러한 서비스를 그러한 첫 학업 연도 (또는 학기)에
수행하였고 그러한 개인이 그러한 두 번째 학업 연도 또는
학기에 어떤 교육 기관에서도 그러한 역량으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계약 또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 개인에게
지불되지 않아야 한다.

(ii) 3309(a)(1) 항이 적용되는 교육 기관을 위한 다른 역량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

(I) 개인이 그러한 서비스를 그러한 첫 학업 연도 또는
학기에 수행하였고 그러한 개인이 그러한 두 번째
학업 연도 또는 학기에 어떤 교육 기관에서도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 두
번의 연속 학업 연도 또는 학기 사이에 시작되는 주의



서비스에 근거한 지불되어야 할 보상은 거절될 수 있으며, 다만

(II)
(I)항에 의거한 어느 기간에 보상이 거부되고 그러한 개인이 두 번째 학업 연도 또는 학기 동안 해당 교육 기관을 위해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러한 개인은 개인이 보상 및 전적으로 (I)항의 사유로 인해 거부된 보상을 위한 클레임을 제기한 각 주에 그러한 개인은 보상의 소급 지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며,

(iii) (i)
또는 (ii)에 설명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그러한 개인이 그러한 휴가 기간 또는 휴가 휴식 직전의 기간에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였고 그러한 개인이 그러한 휴가 기간 또는 휴가 휴식 직후의 기간에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 설립된 및 관습적인 휴가 기간 또는 휴가 휴식 중 시작되는 모든 주에 대하여 개인에게 지불될 것이 거절된다.

(iv) (i) 또는 (ii)에 설명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러한 역량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교육 서비스 기관의 고용 중 교육 기관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한 모든 개인에게 (i), (ii), 및 (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불될 것이 거절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교육 서비스 기관"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교육 기관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되고 운영되는 정부 기관 또는 정부 업체를 의미하고,

(v) 3309 (a)(1)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러한 서비스가 교육 기관에 또는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제공되는 경우, 보상은 (i)항부터 (iv)항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거부될 수 있고, 또,

(vi) (ii)항에 기술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iii) 및 (iv)항은 "거절된다"를 "부인될 수 있다"로 대체함으로써 적용된다.

26 U.S.C. § 3304(a)(6)(A).

법의 결론 :

현재의 경우, 아래서 명자는 제시된 적합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는 사실의 발견을 통해 라고 결론 내립니다. 아래서 명자는 또한 라고 결론 내립니다.

고위당국 결정 번호
5 페이지 중 4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항소 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 수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실업보험 혜택을 수령하기 에 (실격이) (실격이 아니) 어야 합니다.



결정:

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원고는부터실업보험혜택에대해실격입니다.
(실격이아니며부터실업보험혜택을받을것입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항소에참여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해당 팜플렛은 주 천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항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카운티의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년 6월 30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